



혼인빙자간음과 간통

최은순/변호사 www.womenlaw.co.kr

갑

순이는 갑돌이가 총각인 줄 알고 1년 정도 사귀게 되었고, 서로 사랑하게 되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. 갑돌이와 갑순이는 양 가에 인사를 드리고, 결혼 날짜를 잡고 혼합장까지 둘러 상태였습니다.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 갑순이는 갑돌이와 육체적인 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.

결혼식을 앞둔 새벽에 갑돌이가 갑순이의 집에 서 자고 있는 사이, 갑돌이 부인과 친동생이 경찰을 대동하고 나타나 출처 청장은 목격하게 되었고, 결국 갑돌이와 갑순이를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.

갑순이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몰랐던 것도 너무나 예울한 데 간통죄로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으니 이럴 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요?

간

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간음하거나 그와 상간(相姦)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, 여기서의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.

갑순이에게 이 죄를 묻기 위해서는 갑돌이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갑순이가 인식한 상태에서 간음(성관계를 갖음)하여야 합니다.

그런데, 갑순이는 갑돌이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총각인 줄 알고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관계를 맺게 된 것이므로, 갑돌이 부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를 당한다 해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.

오히려 갑순이는 갑돌이가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총각이라고 속여 결혼약속까지 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갑돌이를 ‘혼인빙자간음죄’로 고소할 수 있고, 민사상으로도 이러한 갑돌이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

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다만, 위 혼인빙자간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 고소기한은 갑순이가 갑돌이가 유부남임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만 합니다. 더불어,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
그런데, 위의 사안에서 만약 갑돌이 부인이 갑돌이와 갑순이를 모두 간통죄로 고소(이혼청구 소송을 전제로 함)하고 갑순이도 갑돌이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한다면 갑돌이의 행위는 이 둘 모두에 동시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.

혼인빙자간음죄는 상대방에게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속이고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하는데 위 갑순이의 사안과 달리 구체적인 실제 사안에서는 그 범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

유부남이나 약혼을 한 남자가 본처나 약혼녀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결혼을 전제로 관계를 맺은 경우라면 그 성립은 쉽겠으나, 미혼남자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결혼할 뜻이 있었으나 부모님의 반대나 애정이 식었다는 등 사정변경에 의해 부득이 결혼을 할 수 없다고 변명한다면 그 범의를 입증하기가 객관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.

이런 경우에 약혼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 또한 없으므로 오로지 소액의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.

결국, 혼인 전의 육체적 관계는 상대방의 결혼 약속을 믿어 어쩔 수 없이 응한다고 하기보다 자신의 성적 결정권에 기한 철저한 자기책임하에서 이루어져야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. PPFK